

1. 개정이유

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인원 확대 등 운영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 운영사항을 보완하고, 소방안전교육사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과목 출제범위를 일부 조정하며 한국119청소년단 법제화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응시수수료 인상 및 차수별 분리(시행규칙 제9조의 4)
- 나. 소방안전교육사 제1차 과목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에 소방시설 추가(시행규칙 별표 3의4)
- 다. 한국119청소년단 사업 범위, 소방청장의 지도·감독 근거 마련(시행규칙 제9조의 6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4제1항 중 “3만원”을 “제1차시험은 3만1천원, 제2차시험은 3만5천원”으로 한다.

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6(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및 지도·감독 등) ①법 제17조의6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선발·육성과 활동 지원
2. 한국119청소년단 안전교육·안전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3. 한국119청소년단 안전교육과 관련된 학문·기술의 연구·교육 및 홍보
4. 한국119청소년단 단원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
5. 한국119청소년단 학교 등 관련기관·단체와의 안전교육 관련 자문 및 협력사업
6. 한국119청소년단 안전교육·안전체험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

7. 그 밖에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② 한국119청소년단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

예산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한국119청소년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소방청장은 한국119청소년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사항은 한국119청소년단 정관으로 정한다.

별표 3의4의 제1차 시험 ※ 4과목 중 3과목 선택의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방조직, 연소이론, 화재이론, 소화이론, 소방시설

*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의4(응시수수료) ① 영 제7조의7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라 한다)는 <u>3만원으로 한다.</u>	제9조의4(응시수수료) ① ----- ----- ----- 제1차시험은 3만1천원, 제2차시험은 <u>3만5천원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 <u><신설></u>	② (현행과 같음) <u>제9조의6(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및 지도·감독 등) ①</u> <u>법 제17조의6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의 선발·육성과 활동 지원</u> <u>2. 한국119청소년단 안전교육·안전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</u> <u>3. 한국119청소년단 안전교육과 관련된 학문·기술의 연구·교육 및 홍보</u> <u>4. 한국119청소년단 단원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</u> <u>5. 한국119청소년단 학교 등 관련기관·단체와의 안전교육</u>

관련 자문 및 협력사업

6. 한국119청소년단 안전교육 ·

안전체험 증진을 위한 국제교
류 및 협력사업

7. 그 밖에 한국119청소년단의

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② 한국119청소년단은 매년 12
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업계
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소방
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
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의
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
도 또한 같다.

③ 한국119청소년단은 매년 1월
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실적보
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소방
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소방청장은 한국119청소년
단의 설립목적 달성 및 원활한
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
지원과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
다.

⑤ 그 밖에 사항은 한국119청소
년단 정관으로 정한다.